

14:00~15:00 무역센터 무역회관 51F(소회의실)

서비스관련 대외무역법령상의 문제점과 개정방안

서정두
(호원대학교)

목 차

I. 서언	167
II. 서비스무역의 국내외 현황과 입법동향	168
III. 서비스관련 대외무역법령상의 문제점	174
IV. 서비스관련 대외무역법령의 개정방안	178
V. 결언	185

I. 서언

“서비스”(services)라 함은 정확한 개념 정의는 어렵지만 물리적 소유권을 전제로 하는 ‘물품’(goods)과 구분하여 경제주체의 어떠한 행위, 노력 또는 이행을 말하며¹⁾, 서비스의 일반적인 특징은, 첫째 이를 공간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무체성(intangibility), 둘째 생산에서 소비과정의 비분리성(inseparability), 셋째 서비스품질의 일관성 유지가 어려운 이질성(heterogeneity), 넷째 시간적으로 저장이나 저축이 불가능한 소멸성(perishability) 등을 꼽을 수 있다.²⁾

원래 서비스란 유체물과 구분하는 개념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그 범위는 소위 WTO/GATS로 커버되는 노동집약적인 ‘인력서비스’ 분야뿐만 아니라, WTO/TRIPS 협정으로 커버되는 ‘지식기반서비스’ 내지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디지털재)의 제공 등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오늘날 세계경제는 점차 산업구조의 소프트화와 서비스화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서비스부문의 세계화는 자연스런 현상이며, 따라서 서비스산업과 기업은 세계화의 추세에 따른 새로운 경쟁환경에 적응하고, 더 좋은 서비스 컨텐츠를 보다 싸게 제공하는 등 국제적인 요구를 충족시켜 나가야 한다.

OECD 국가중 미국은 1900년 고용인력의 30%만 서비스산업에 종사하던 것이 1990년 중반에 들어 고용인력의 80% 가까이 서비스산업에 종사하고, 민간 부문의 서비스생산은 GDP의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럽의 경우 GDP의 60%, 일본의 경우 GDP의 58%가 서비스생산으로 채워지고 있다.³⁾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교역량 5,000억불(세계 12위) 시대를 맞이하였으나, 아직 선진국에 비해 서비스산업의 GDP 비중이나 고용 비중이 낮다.⁴⁾ 따라서 선진경제로의 진입을 위하여는 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시켜 경쟁력을 강화하고, 특히 서비스수지 적자를 만회하기 위한 서비스수출 증대대

1) K. Douglas Hoffman and John E.G. Bateson, *Essentials of Services Marketing: Concepts, Strategies & Cases*, 2nd ed., South-Western, 2001, p. 4.

2) John E.G. Bateson, *Managing Services Marketing*, 3rd ed., Dryden Press, 1995, p. 9.

3) Hoffman and Bateson, *op. cit.*, p. 14~15; H.R. Rep. No. 97-637(I); www.usit.gov.

4)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2003년 GDP 비중 57%, 2004년 고용비중 65%(서비스산업 관계장관회의,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방안”, 2005. 3, p. 1).

책, 예컨대 범국가적인 서비스수출 지원체제와 해외마케팅 및 국제협력을 확대하고 물품무역에 준하는 수출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할 시점에 있다.

본 연구는 서비스무역의 국내외 현황과 입법동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서비스수출 증대를 위한 무역지원체제, 특히 대외무역법령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각 조항의 구체적인 개정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둔다.

II. 서비스무역의 국내외 현황과 입법동향

1. 세계 서비스무역 동향

최근 세계 서비스무역은 2003년 1조 7,626억불(수출액 기준)로서, 물품무역보다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⁵⁾ 국가별로는 미국의 서비스수출이 2003년 2,825억불로서 세계 서비스무역의 17%를 차지하며⁶⁾, 영국 1,295억불, 독일 1,117억불, 일본 702억불의 순으로 선진국이 서비스무역을 주도하고 있다.⁷⁾ 한편 중국 445억불, 인도 233억불 등 개도국의 서비스수출도 급증하고 있다.

부문별 서비스무역은 1990년대 이후 정보통신, 문화, 금융, 사업서비스, 컴퓨터링·컨설팅과 같은 지식기반서비스(knowledge-intensive services) 등 기타 서비스의 세계시장 비중이 운수·관광 서비스분야보다 높아지는 추세이다.⁸⁾

5) 세계 물품수출의 연평균 증가율 6.1%('91~'03), 서비스수출의 연평균 증가율 6.4%('91~'03)(경제장관담회, "서비스수출 증대대책", 2004. 6, p. 1).

6) 미국의 경우 서비스수출의 주요 상대국은 EU(960억불)·일본(300억불)·캐나다(240억불) 등이 54%를 차지하고 있다(Larry A. DiMatteo and Lucien J. Dhooge, *International Business Law*, Thomson, 2nd ed., 2005, p. 401).

7) 영국의 경우 2003년 서비스수출액이 물품수출액의 절반에 달하고, 주요 부문은 기업지원서비스이고, 주요 상대국은 EU(49%)·미주(29%) 등이다(영국대사관자료, 2005. 3).

8) DiMatteo and Dhooge, *ibid.*, p. 401.

<표-1> 주요 서비스부문별 세계시장 비중(%)

부문별	1990년	1995년	2000년	2001년	2002년
· 운수서비스	28.5	25.2	23.1	22.9	22.4
· 관광서비스	33.8	33.7	32.0	31.2	30.6
· 기타서비스*	37.6	41.1	44.9	45.9	47.0

* 기타서비스는 정보통신, 문화, 금융, 무역관련 서비스, 리스, 컨설팅·광고·R&D·시장조사 서비스 등을 포함(WTO 자료).

향후 기술혁신·정보통신의 가속화, 산업구조의 서비스화, 선진국 기업의 해외 아웃소싱 확대, WTO 중심의 서비스시장 개방 논의가 진전을 보임에 따라 세계시장에서 서비스무역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 서비스무역의 국내 현황 및 제약요인

우리나라의 서비스무역은 2001~2002년(수출액 기준)에 연속 감소세를 보이다가 2003년 329.6억불, 2004년 414.3억불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4년의 전체 서비스수출 중 운수서비스가 54.1%(224.4억불), 관광서비스가 13.8%(57.1억불), 사업서비스가 20.2%(83.7억불)를 각각 차지하고 있으며<표-2 참조>, 최근 운수서비스 수출은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관광 및 사업서비스 수출이 감소추세를 보이는 현상이 세계 서비스무역의 동향과 대조적이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 서비스수출의 국민총생산 비중과 세계속의 위상은 점차 저하되는 추세에 있다. 즉, 서비스수출/GDP 비중이 1998년 7.4%에서 2003년 5.4%까지 하락하고 있으며, 전세계 서비스수출에 차지하는 비중도 2000년 2.0%(세계 12위)에서 2003년 1.7%(세계 17위)로 하락하고 있다. 한편 2003년 물품수출 대비 서비스수출의 비중도 14.5%로서, 미국의 39.0%, 영국의 42.6%, OECD 회원국 평균인 26.9%보다 크게 미달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⁹⁾

9) WTO 자료(<http://www.wto.org>);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자료.

<표-2> 주요 부문별 서비스수출 동향(억불)

서비스수출 (收入)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전체	305.3(100)	290.6(100)	283.9(100)	329.6(100)	414.3(100)
1.운수*	136.9(44.8)	131.8(45.4)	132.2(46.6)	171.8(52.1)	224.4(54.1)
2.관광**	68.3(22.4)	63.8(22.0)	59.4(20.9)	53.6(16.3)	57.1(13.8)
3.통신서비스	3.9(1.3)	4.0(1.4)	3.8(1.3)	3.4(1.0)	4.0(1.0)
4.건설서비스	0.3(0.1)	0.8(0.3)	0.4(0.1)	0.4(0.1)	0.4(0.1)
5.보험서비스	0.7(0.2)	0.6(0.2)	0.4(0.1)	0.3(0.1)	0.6(0.2)
6.금융서비스	7.1(2.3)	5.3(1.8)	7.0(2.4)	7.0(2.1)	10.8(2.6)
7.컴퓨터 및 정보서비스	0.1(0.03)	0.2(0.1)	0.2(0.1)	0.3(0.1)	0.2(0.1)
8.사업서비스	72.0(23.6)	63.9(22.0)	60.1(21.2)	66.9(20.3)	83.7(20.2)
-무역관련	9.7(3.0)	8.8(3.0)	7.8(3.0)	10.9(3.0)	15.9(4.0)
-운용리스	0.4(0.6)	0.9(0.01)	1.2(0.2)	1.8(1.3)	2.7(0.2)
-기타사업	61.9(20.0)	54.1(9.0)	51.1(8.0)	54.2(16.0)	65.2(16.0)
9.특허권 등 사용료	6.9(2.2)	9.2(3.2)	8.4(2.9)	13.1(4.0)	17.9(4.3)
10.개인, 문화, 오락서비스	1.4(0.4)	1.4(0.5)	1.9(0.7)	0.8(0.2)	1.3(0.3)
11.정부서비스	7.9(2.6)	9.5(3.3)	10.4(3.8)	12.0(3.7)	13.8(3.3)

* 운수분야 : 2004년 해운 75.1%(134.6억불), 항공 16.7%(29.9억불) 등

** 관광분야 : 2004년 관광숙박업 57.8%(14.0억불), 카지노업 18.3%(4.4억불), 여행업 17.2%(4.2억불), 국제회의업 5.9%(1.4억불) 등(문화관광부 자료).

<표-3> 주요 부문별 서비스수지 동향(억불)

부문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1-9
A.상품수지	93.4	103.4	149.9	293.8	125.2
B.서비스수지	-38.7	-82.0	-74.2	-87.7	-105.9
· 운수	21.4	19.1	35.7	45.4	28.7
· 관광	-12.3	-45.3	-47.4	-62.7	-72.8
· 사업서비스	-28.5	-36.0	-43.6	-50.8	-47.0
· 특허권등 사용료	-21.3	-21.7	-22.6	-26.6	-22.3
C.경상수지(A+B)	80.3	54.0	119.5	276.1	19.3

서비스수지 동향도 1990년에 적자로 전환된 이후 최근까지 매년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¹⁰⁾ 2004년 서비스수지 적자는 87.7억불로서, 상품수지 흑자 293.8억불의 29.9%에 달하여 경상수지 흑자폭을 상당부분 상쇄하고 있다<표-3 참조>. 이는 미국·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 서비스수지가 흑자이고, 특히 미국이 관광·기타서비스 부문에서 큰 폭의 흑자를 내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서비스무역이 저조한 주된 제약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비스산업의 수출경쟁력이 전반적으로 취약하다. 서비스부문의 비교우위지수('01 기준, 전체 경쟁력=1)가 0.83으로서, 미국·영국 등 선진국에 비해 취약하고, 지식서비스 분야의 경우 제작능력은 경쟁국기업과 비슷하나 전반적인 기획력과 마케팅역량이 60% 수준에 머문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¹¹⁾

둘째, 물품무역에 비해 서비스관련 무역지원제도가 미흡하다. 그동안 무역지원제도는 물품무역 위주로 운영되어 서비스무역에 대한 무역금융·수출보험·마케팅 등 기업지원의 차별대우가 심하며, 이용가능한 무역지원제도의 경우에도 홍보 부족 등으로 서비스 무역기업의 10% 내외만이 이용할 정도이다. 또한 서비스무역의 대금영수방식이 Royalty 또는 Running Guarantee가 주종을 이루기 때문에, 특성상 현행 무역지원제도로는 실질적 지원이 곤란하다.¹²⁾

셋째, 서비스무역 증대노력이 미흡하고 인프라가 취약하다. 그동안 서비스산업은 내수위주로 발전하여 정부·업계의 서비스무역에 대한 관심과 서비스수출 증대노력이 저조하였다. 즉, 해외시장정보·마케팅망·지원체제 등 무역인프라가 물품무역에 치중되어 서비스기업에게 불리하며, 여러 기관에 산재된 서비스부문의 지원업무도 기능별·부문별 지원기관간 연계체제가 미흡하여 지원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서비스산업은 특성이 다른 수많은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모든 서비스부문을 종합하는 무역증대 대책의 추진이 곤란하다.

넷째, 서비스무역의 실태파악 및 애로해소 체제가 미흡하다. 서비스무역 통계가 대부분류 항목으로만 작성되어 서비스무역의 세부 실태파악이 어렵고¹³⁾, 수출

10) 산업자원부, “서비스수출 활성화를 위한 대외무역법령 개정방안”, 2005. 9, pp. 49~50;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및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서비스’(<http://stat.kita.net>) 자료에서 발췌한 것이다.

11) 주요 국가별 서비스부문의 비교우위지수: 미국 1.43, 영국 1.47, 프랑스 1.12, 독일 0.69, 일본 0.74, 싱가폴 0.91(한국무역협회, “지식서비스기업 수출실태조사”, 2002. 11).

12) 한국수출보험공사, “기술·용역수출보험제도 도입검토(안)”, 2004. 12, pp. 3~4.

13) 우리나라의 서비스무역 통계는 IMF/BOPs를 참조하여 한국은행이 설정한 11개 분야의 28개 항

기업의 애로해결 채널도 미흡하며, 서비스의 무체성과 암묵거래 등의 특성 때문에 물품무역에 비해 해외 시장동향 파악과 거래선 발굴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캐릭터·디자인·S/W 등의 경우 불법복제로 인한 산업재산권의 침해소지가 크지만 현지 모니터링 및 법적 대응의 지원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3. 서비스무역 관련 국내외 입법사례

해외의 서비스관련 대표적인 통상규범을 살펴보면, 첫째 1995년 출범한 WTO 협정에는 서비스무역과 직접 관련하여 ‘서비스무역협정’(Agreements on Trade in Services: GATS)이 있고, 특히 지식서비스와 관련하여 ‘지적재산권협정’(Agreements on Intellectual Property: TRIPS) 등이 있으며, 이들 협정은 각각 서비스무역이사회와 지적재산권이사회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다.¹⁴⁾

둘째, 미국의 경우 1974년 ‘통상법’(Trade Act)은 통상(commerce)의 범위에 i) 특정 물품과의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국제무역에 관련된 서비스(정보 이전을 포함), ii) 미국민의 물품 또는 서비스무역에 관련된 해외투자 등을 포함시켜 본법 제301조 조치를 발동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¹⁵⁾ 또 1982년 ‘미합중국법전’(United States Code)에도 “수출무역”(export trade)이라 함은 미국에서 생산된 물품 또는 서비스(services)가 미국으로부터 다른 국가로 수출되거나 수출되는 과정에 있는 무역이나 통상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¹⁶⁾

셋째, 유럽의 경우 ‘EC 조약’ 제133조에 의하면, EU 집행위원회가 동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대외무역의 통일된 원칙, 즉 대외 공동통상정책을 집행할 때 이 조항의 규정은 물품무역뿐만 아니라, 서비스무역(trade in services)과 지적재산권의 협상 및 협정 체결에도 공히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¹⁷⁾

넷째, 일본의 경우 ‘외국환및외국무역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면, 거주자가 비

목으로만 분류하고 있어 상세 서비스부문별 무역동향을 파악하기 곤란하다.

14) WTO 설립협정 제4조.

15) 1974 통상법 제301조 제d항 제1호. 1988 종합무역법(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제1107조 제a항 제5호에도 “국제무역”이라 함은 i) 물품 및 서비스무역, ii) 미국민의 물품 및 서비스무역에 관련된 해외직접투자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6) 1982 U.S.C. 제15편 제66장 제4002조 제a항 제1호.

17) EC 조약 제133조 제1항 내지 제5항.

거주자와의 役務去來(노무나 편익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에 있어서 시행령에 정하는 것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役務去來에 대하여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서비스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서비스무역 대상물(지재권 포함)의 분류동향을 보면, 첫째 WTO/GATS 협상시 선언한 서비스분야는 운수, 관광, 사업서비스, 통신서비스, 건설, 유통, 교육, 환경, 금융, 보건·사회서비스, 문화·오락·스포츠 등 총 11개 분야 155개 업종이 양허 스케줄에 제시되었으며¹⁸⁾, GATS에서 '서비스무역'의 개념을 i) 서비스의 국경간 이동(cross-border supply), ii) 서비스의 해외소비(consumption abroad), iii) 서비스의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 iv) 자연인의 주재(presence of natural persons) 등 4가지 유형으로 정의하고 있다.¹⁹⁾

또 WTO/TRIPS 협정은 지식서비스로서 '지적재산권'의 개념에 관하여 저작권·저작인접권, 상표권, 지리적 표시권, 의장권, 특허권, 집적화로 배치설계권, 미공개정보의 보호 등 모든 범주의 지적재산권을 포함시키고 있다.²⁰⁾

둘째, OECD 서비스무역자유화규약(Code of Liberalisation of Current Invisible Operations)의 '서비스 거래목록'에는 사업·산업, 해외무역, 운수, 보험, 은행·금융서비스, 자본소득, 여행·관광, 영화, 개인소득·지출, 공공소득·지출, 잡거래 등 11개 분야에 걸쳐 서비스를 분류하고 있다.²¹⁾

셋째, 미국의 경우 1982년 미합중국법전(U.S.C.)은 '서비스'의 개념에 회계, 오락, 건축, 자동정보처리, 사업, 통신, 건설 프랜차이즈·라이센스, 컨설팅, 엔지니어링, 금융, 보험, 법무, 경영, 보수, 관광, 연수, 운수서비스 등을 포함하고, 특히 "수출무역서비스"란 용어는 컨설팅, 국제시장조사, 광고, 마케팅, 보험, 제품발굴·디자인, 법무지원, 수송, 수출서류 작성을 포함한 운송주선업, 외국 주문서의 통지·처리, 창고업, 외환, 금융, 국내생산 물품·서비스가 수출에 제공되는 경우 물품에 대한 권리부여 등으로 확대 정의하고 있다.²²⁾

특히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과 관련하여, 2002년 미국 UCITA(통일컴퓨터정보

18) MTN/GNS/W/120(대외경제정책연구원, 「WTO 출범과 신교역질서」, 1994. 7, p. 312).

19) WTO/GATS 제1조 제2항 및 제28조 제b호.

20) WTO/TRIPS 협정 제1조 제2항 및 제2편 제1절 내지 제7절.

21) OECD, *List of Current Invisible Operations in the Code of Liberalisation of Current Invisible Operations*, 2004. 9.

22) 1982 U.S.C. 제4002조 제a항 제2호 내지 제3호.

거래법)에 의하면 “컴퓨터정보”라 함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처리될 수 있는 형태로 구성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 즉 데이터·텍스트·이미지·음향·배치설계·컴퓨터프로그램이나 이들의 수집 및 집적을 말하고, 이를 정보의 복제물과 이에 결합된 문서나 패키지 등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²³⁾

넷째, 우리나라의 경우 대외무역법은 ‘무역’의 범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입을 포함시키고 있으며(제2조 제1호), 또 한국은행 통계지표인 ‘서비스수지’ 항목에는 운수(화물·여객·운항·항만경비), 여행(일반여행·유학·연수), 기타서비스(통신·보험·특허권등 사용료·사업서비스·정부서비스) 등의 대분류와 함께 10단위의 세부적인 외환수급심사코드에 따라 대외 서비스무역의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²⁴⁾

특히 지적재산권 분야는 1998년 4월부터 특허청이 공식명칭을 ‘지식재산권’으로 사용하고²⁵⁾, 그 유형을 산업재산권(특허권·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저작인접권), 신지적재산권(산업저작권, 첨단산업재산권, 정보재산권) 등으로 분류 발표한 바 있다(특허행정정책자문위원회).

III. 서비스관련 대외무역법령상의 문제점

1. 대외무역법과 서비스규정

국민경제에서 서비스부문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대외무역환경도 서비스의 세계화, 디지털재·문화컨텐츠 등 새로운 서비스재의 등장, 운송·통신기술의 발달과 전자무역 등 디지털 도구에 의한 다양한 거래방식이 등장하므로²⁶⁾, 무

23) 2002 UCITA 제102조 제a항. UCITA(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란 1999년 7월 미국 NCCUSL(통일주법전국위원회)에 의하여 각 주의 모델법으로서 제정되고, 2002년 8월에 개정된 컴퓨터정보거래에의 적용을 목적으로 하는 세계 최초의 일반적 계약법을 말한다.

24) 한국은행 외환수급심사코드상의 서비스항목(110~999)은 유학생, 여행, 운수, 보험, 투자수익, 정부거래, 잡용역, 중여, 외화증권, 기타 자본거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5) 이한상·김준학, 「지식재산권법」, 제일법규, 2000, p. 35.

26) Sjoholt Peter, "The Internationalization of Commercial Activities", *Trading Services in the Global Economy*, Edward Elgar, 2002, p. 155.

역관련 국내규범의 존립에 변동요인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대외무역법은 무역의 대상물로서 ‘서비스’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없고, 거래방식도 WTO/GATS와 일치시키는 등 현행 법령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첫째, 대외무역법은 1986년에 제정된 후 2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시대적으로도 재입법의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 본법은 총 15차례 개정되면서 법조문이 상호 모순되거나 복잡·난해할 뿐만 아니라, 무역관련 주변 법안이 제정되면서 중복된 규정이 많아 21세기의 대외무역환경에 적합한 무역기본법으로서 법안의 성격·기능 등 제반 요소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현행 법령은 물품무역 위주의 법률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즉, 무역거래의 대상을 유체동산의 개념 중심으로 정의하고 관련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는 궁극적으로 국가간 경쟁이 치열한 글로벌 시대에 서비스무역이나 해외투자 촉진분야의 국제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서비스무역에 대한 근거법령의 부재와 제조업에 비교한 상대적 차별 등은 수출증대대책의 미흡과 관심소홀 및 관련업계의 불신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서비스수지의 만성적인 적자와 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셋째, 대외무역법은 서비스무역의 국제규범인 GATS와의 일치성이 미흡하다. 현행 법령은 서비스제와 관련하여 일부 ‘지식기반서비스’에 한정하고 있으며, 전자무역과 관련하여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란 애매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²⁷⁾ 무역방식은 전자무역촉진법(안)에 있기 때문에, 대외무역법은 서비스제의 한 종류로서 디지털 컨텐츠 등에 관한 규정만을 두어야 한다.

넷째, 대외무역법의 현행구조를 방치하면 향후 대외무역 시스템의 혼란과 불편 등 다수의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본법은 서비스·서비스산업 및 서비스무역의 발전전략에 맞추어 개편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요컨대 대외무역법의 개정시 고려사항은 서비스무역의 경쟁력 향상, 서비스무역 지원방안, 물품무역과의 차별성 개선, GATS에의 일치문제 등을 반영하여 서비스무역 활성화의 법적 근거를 모색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서비스무역의 개념과 범위, 수출입실적 인정, 서비스 부문별 관련사항, 서비스무역 프로세스 관련 개선사항 등을 현행 조항별로 정밀 검토하여야 한다.

27) 대외무역법 제2조 제1호: “무역”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동법시행령 제2조의2 ‘용역의 범위’, 제2조의3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등.

만약 재입법을 검토한다면, 법명은 ‘무역기본법’ 또는 ‘종합무역법’으로 대체 입법하고, 종합무역법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물품·서비스규정 및 물품·서비스를 유발하는 해외직접투자 촉진에 관한 규정도 두어야 할 것이다.²⁸⁾

2. 서비스관련 무역지원제도

WTO 협정에 의하면, 공정무역을 저해하는 무역지원제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서비스무역의 경우 한정된 범위내에서 각국의 국내조치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또 한시적 장치를 마련하여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되 장기적으로는 물품무역의 경우와 일치시키도록 하고 있다(GATS 제15조).

우리나라 무역지원제도의 주된 내용은, 첫째 금융·세제지원으로서 무역금융, 수출신용보증, 수출보험, 환변동보험, 부가세의 영세율 적용, 각종 부담금 등이 있고, 둘째 마케팅지원으로서 해외시장조사, 해외마케팅관련 인력·자금지원 등이 있고, 셋째 무역업무지원으로서 기업·상품정보제공, 컨설팅, 디자인, 교육·연수, 행정지원 등이 있고, 넷째 기업체지원으로서 병력특례, 외국인산업연수생 배정, 포상, 이 달의 무역인상 등이 있다.

무역지원의 대표적인 수단은 대외무역법상 수출실적확인에 근거한 수출금융 지원, 세금감면이나 환급, 무역의 날 포상, 병력특례나 인력지원, 세무조사 유예 등이 있으나, 이들은 모두 물품무역의 바탕 위에서 만들어진 제도이다.

따라서 현재는 서비스무역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무역지원제도가 없으며, 서비스부문의 특별한 지원제도가 아니더라도, 예컨대 수출실적확인의 경우 제한적인 범위내에서만 서비스부문에 적용되기 때문에 물품무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는 것이 사실이며, 또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개념에도 중간재나 최종재로서 외화획득용 서비스의 개념은 반영되어 있지 않다.

28) 미국의 1974 통상법 제301조 제d항 제1호 및 1988 종합무역법 제1107조 제a항 제5호, EC 조약 제133조 제1항~제5항, 일본 외국환및외국무역법 제26조~제46조 참조.

3. 무역금융과 수출실적확인제도

무역금융이란 상품의 특성에 맞게 무역자금을 지원하여 금융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수출입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즉, 물품·서비스의 수출촉진을 통한 무역수지 개선을 위하여 무역업자, 수출물품 생산업자(수출용 원자재 포함) 및 서비스업자를 용자대상으로 수출물품·수출용 원자재 및 서비스의 생산자금, 원자재 및 완제품의 구매자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무역금융은 지원대상에 따라 수출입금융, 건설용역수출금융, 농수산물 수출준비자금대출 등이 있으며, 또 용자방법에 따라 신용장기준금융(개별·포괄금융)과 실적기준금융(개별·포괄금융) 등이 있는데, 특히 실적기준금융은 전별 L/C 등의 내도와 관계 없이 과거 수출실적을 바탕으로 산정된 용자한도 내에서 자금용도별(개별금융) 또는 용도별 구분 없이(포괄금융) 용자하고 있다.

용자대상 수출실적확인은 수출실적관리카드에 계상될 수 있는 수출실적, 즉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내국신용장에 의한 원자재 내지 완제품의 공급실적을 합산한 금액을 원칙으로 하며, 대외무역법령상 수출실적의 인정금액은 수출신용장 등의 FOB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수출실적의 인정시점은 수출통관액 중 수출대금의 입금완료분만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²⁹⁾

그러나 현행 법령상 수출실적의 인정범위·인정금액·인정시점·인정기관 등에 관한 규정은 일부 지식기반서비스와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에만 적용가능할 뿐이며, 각종 서비스무역에 종합적으로 적용가능한 규정은 없다.

4. 외화획득용 지원제도의 문제점

대외무역법은 수출 등 외화획득³⁰⁾ 행위를 진흥하기 위하여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출입실적 인정 및 이에 따른 무역업무나 금융·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예컨대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은 수출입공고의 적용배제, 원산지표시면제 등 통관시 우대, 부가세 영세율 혜택이 있다.

29)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6-2조 내지 제3-6-3조 및 제4-2-16조.

30) '외화획득의 범위'는 수출, 균납(주한 유엔군 기타 외국군기관에 대한 물품매도), 관광, 용역 및 건설의 해외진출, 외화표시 국내거래로 한다(대외무역법시행령 제34조 제1항).

또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국내구매도 수출실적으로 인정하고, 금융·세제 지원을 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는 대외무역법과 무역금융 관련규정(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무역금융취급세칙)에서 규정한 구매확인서 또는 내국신용장에 의한 거래에 한하여 이를 인정한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4-2-6조).

특히 구매확인서는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된 물품등을 외화획득용 원료·기재 또는 물품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이 내국 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증서를 말한다(규정 제1-0-2조 제17호).

구매확인서는 D/P·D/A 거래 등 L/C를 받지 못한 수출자가 수출용 원자재를 구매하였을 때 수출실적확인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의 근거가 된다. 예컨대 외화획득용 원자재의 국내구매시 구매확인서는 수출실적확인에 의한 금융·세제 및 대출 혜택, 병력특례, 상훈(포장), 수출보험·환변동보험, 수출유망중소기업(500만불 이하) 지정 등의 판단 근거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령상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지원제도는 외화획득의 범위로서 서비스관련 조항이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며, 또 ‘원료·기재’의 개념은 유체물 자원의 거래관계에서 출발하였으므로 서비스 관점에서는 부적합한 부분이 많다. 따라서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에 대한 구매확인서의 신청요건은 서비스무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대폭 완화하여야 할 것이다.

IV. 서비스관련 대외무역법령의 개정방안³¹⁾

최근 산업구조가 선진화되면서 해운·관광³²⁾ 등 서비스분야를 무역의 범위에 포함시켜 수출증대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즉, 대외무역법령을 개정하여 무역업체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를 서비스분야에도 확대 적용하면, 이 분야의 외화획득과 고용창출 및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법령의 개정방향은 i) 무역대상 ‘서비스’(용역)의 범위를 확대

31) 이하 필자가 산업자원부에 제출한 공동연구보고서 “서비스수출 활성화를 위한 대외무역법령 개정방안”(2005. 9)의 주요내용을 발췌한 것임을 밝혀 둔다.

32) 우리나라의 2004년 서비스수출 414.3억불 중 해운이 32.5%, 관광이 13.8%를 차지하였다.

하고, ii) 수출실적확인제도를 개선하며, iii) 외화획득용 서비스의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iv) 기타 대외무역관리규정 등을 보완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1. 무역대상 ‘서비스’의 범위 확대

현행 법령은 서비스무역과 관련하여 일부 지식기반서비스만을 무역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첫째 이에 운수·관광³³⁾ 등 일반 서비스분야를 무역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시해 본다(시행령안 제2조의2). 즉, 서비스무역의 활성화를 위하여는 지식기반서비스뿐만 아니라, 외화획득 실적이 현저하여 국제수지표상에 코드화되어 있고 수년간 WTO/GATS 하에 공식개방 타결된 일반 서비스분야를 무역대상 ‘서비스’의 범위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

일반 서비스분야의 업종은 최근 국제수지의 동향분석에 따른 수출증대 기여도와 범국가적인 관심분야 등을 반영하여, 운수(해운 등), 관광, 사업서비스, 금융·보험, 정보통신, 문화, 전시산업 등으로 열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서비스수지 통계지표가 운수, 여행, 통신, 건설, 보험, 금융, 컴퓨터·정보서비스, 사업서비스, 특허권등 사용료, 개인·문화·오락서비스, 정부서비스 등 11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또 최근에 정부의 발표자료에 의하면 서비스수출 주요 관심분야도 관광, 해운, 문화산업, 정보통신, 특허 등 지적재산권, 디자인·전시산업 등에 맞추어져 있다.³⁴⁾

둘째, 교육·의료 등 전문직 서비스분야도 무역의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해 본다(시행령안 제2조의2). WTO 출범 이후 각국의 교육·의료서비스 시장의 개방과 해외건설 경기의 회복 등 대외무역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서비스수출 유망분야인 i) 교육·훈련서비스(직업전문교육, 학원 등), ii) 보건·의료 등 사회서비스, iii) 건설업 등을 무역의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이를 전문분야에 대한 각종 수출촉진 인센티브의 혜택과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과당경쟁 및 만성적 수지역조의 안정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33) 운수분야의 2004년 외화획득액 224.4억불 중에 해운업이 75.1%(134.6억불), 항공업이 16.7%(29.9), 운수조달재가 8.2%(14.7)를 차지하고 있으며, 관광분야의 2004년 외화획득액 57.1억불 중에 관광숙박업이 57.8%(14.0억불), 카지노업이 18.3%(4.4억불), 여행업이 17.2%(4.2억불), 국제회의업이 5.9%(1.4억불), 유원시설업이 0.8%(0.2억불)를 차지하였다.

34) 경제장관간담회, “서비스수출 증대대책”, 2004. 6, pp. 13~15.

특히 교육·의료서비스는 그동안 공공재로만 인식된 특수분야이었으나, 최근 관련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영리성이 부여되고 자유경쟁체제에 들어감으로써 업계에서는 이미 글로벌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실정이다.³⁵⁾

우리나라는 교육·훈련서비스부문에서 중국, 베트남 등 주변국보다 경쟁우위에 있다고 판단되므로 외화획득의 좋은 기회가 되며, 외국인의 국내교육기관 설립이 가시화되고 내국인의 무분별한 해외유학에 따른 외화낭비의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³⁶⁾ 이러한 이유는 보건·의료산업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OECD 서비스무역자유화규약에서도 지식기반 ‘전문직 서비스’의 범위에 회계, 예술, 경영상담, 의료, 훈련, 법무 등의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다.³⁷⁾

셋째, 현행 법령에서 무역의 대상으로 규정한 지식기반서비스 항목에 지리적 표시권(geographical indications)·영업비밀(undisclosed information)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해 본다(시행령안 제2조의2). 현행 법령은 지식기반서비스와 관련하여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저작권·저작인접권·프로그램저작권·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 등을 무역의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WTO/TRIPS 협정과 국내의 지적재산권 관련법령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지리적 표시권·영업비밀 등이 누락되었으므로 이를 추가하여야 한다.

2. 서비스수출실적확인제도의 개선

현행 법령은 물품 위주의 수출실적확인제도를 두고, 일부 지식기반서비스와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에만 확대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서비스분야의 수출입확인서³⁸⁾ 발급기관은 현재 용역의 경우 ‘한국무역협회’,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경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또는 한국무역협회’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를 각 서비스분야의 특성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35) 권순만, “의료서비스산업의 발전방안”, 「지식서비스포럼」(산업자원부등), 2005. 6, p. 64.

36) 임천순, “교육서비스산업의 진단과 과제”, 「지식서비스포럼」(상계자료), 2005. 6, p. 97.

37) "L General - L/6. Professional services (including services of accountants, artists, consultants, doctors, engineers, experts, lawyers, etc.)"(OECD, *List of Current Invisible Operations*, 2004. 9, p. 25).

38) 수출입확인서란 외국환은행 등에 의한 수출·수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신청)서를 발급받는데 필요한 수출입사실 확인의 기초서류로서, 현재 수출입통관절차가 없는 용역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수입에 대하여만 운용하고 있다.

위탁하는 관계 행정기관 기타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확대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개방해 두어야 한다(시행령안 제31조의2).

왜냐하면 각 서비스분야의 수출입 시스템은 매우 이질적이고 다양하여 수출입확인서의 발급업무를 한 두 기관에 집중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각 해당 분야의 관계 행정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일부 권한의 위탁에 의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업무를 분할 개방할 필요가 있다.

우선 서비스분야 중 무역 비중이 가장 큰 해운분야의 '한국선주협회', 관광분야의 '한국관광협회중앙회'를 추가하고 기타 준비된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지정 할 수 있도록 내용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해 본다(시행령안 제116조).

둘째, 서비스분야의 수출입확인업무에 대한 전산관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방안을 제시해 본다(시행령안 제30조). 최근 서비스분야의 수출입확인서 발급건수가 증가하고 발급기관의 확대 지정이 불가피하므로, 이들 분야의 수출입확인업무의 과학적인 전산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서비스무역 전산관리 시스템의 개발·운영에 필요한 정보는 서비스 분야별로 수출입확인서 발급기관을 지정하고 그 지정된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요청·보고하도록 하는 관리구도로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시행령안 제31조).

또 서비스분야의 수출입확인서 신청절차도 기존의 용역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등 2개의 대상물별로만 규정하고 있으나, 점차 그 대상물이 다양한 용역분야와 전자적 무체물, 소액물품·상계물품등(후술)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출입확인서의 발급신청, 확인서 발급 및 발급기관의 사후관리³⁹⁾ 등의 단계별로 관련규정을 재정리할 필요가 있다(규정안 제3-6-6조).

셋째, 소액물품·상계물품등의 수출실적도 인정해 주는 방안을 제시해 본다(시행령안 제31조의2). "소액물품"이라 함은 여행자 휴대품, 전자상거래⁴⁰⁾ 등에 의한 택송품·별송품·우편물 등 수출입신고가 생략되거나 간이신고되는(PL 신고) 경우로서⁴¹⁾, 중소업계의 요구에 의하면 이들 소액물품의 누적분에 대하

39) 발급기관의 사후관리란 각 발급대장을 비치하고 발급상황 등을 기록하며, 동 발급상황 등을 매월 20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말한다.

40) 전자상거래 중 무체물의 온라인(on-line) 무역의 경우는 현재에도 수출입실적이 한국무역협회나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수출입확인서에 의해 실적증명의 발급이 가능하다.

41) 관세법 제94조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241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0-1조 참조.

여도 수출실적을 인정하여 각종 인센티브에 접근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또 “상계물품등”이라 함은 수출행위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외국환은행을 통한 대금의 영수 없이 다른 대응거래에 상계처리된 경우로서⁴²⁾, 이러한 방식의 물품·서비스 수출행위도 실적을 인정해 주는 것이 공평하다.

현행 법령상 소액물품의 경우는 수출입통관이 생략되거나 간이신고되기 때문에, 수출사실이 있더라도 수출입확인서의 발급이 불가능하며, 또 상계물품등의 경우는 수출사실이 입증되더라도 외국환은행을 통한 대금의 영수가 없기 때문에 수출실적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소액물품·상계물품등의 수출실적 인정시점은 외국환은행의 각 입금일·결제일로 하고, 인정금액은 이하 수출입확인서를 근거로 한 외국환은행의 각 입금확인액·결제확인액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규정안 제3-6-2조).

소액물품·상계물품등의 수출입확인서 발급업무는 기존의 ‘한국무역협회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그 업무를 겸할 수 있도록 일괄 위탁하는 것이 적절하다(규정안 제3-6-5조의2). 다만 소액물품·상계물품등의 경우도 수출·수입실적의 최종 확인 및 증명 발급기관은 현행 법령(물품등)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 되도록 내용을 보완하여야 한다(규정안 제3-6-4조).

또 소액물품·상계물품등의 수출입확인서 발급신청자는 i) 소정의 수출입확인신청서에 ii) 거래사실과 대금결제의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무역협회 등에 신청 수속하도록 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규정안 제3-6-6조).

다만 소액물품의 경우 수출입신고가 생략되거나 간이신고되며, 상계물품등의 경우 당사자간에 외화의 영수가 없기 때문에 외화의 불법유출에 악용될 가능성 이 있으므로 거래사실의 철저한 증빙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즉, 소액물품의 경우 수출입확인서 첨부서류로 i) 수출계약 입증서류(주문서·오퍼·견적서 포함), ii) 외국환은행의 입금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고, 상계물품등의 경우 수출입확인서 첨부서류로 i) 수출계약 입증서류, ii) 외국환은행의 ‘상계처리 신고필증’ 등을 제출 확인하게 하는 방안이 있다.

42)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3항 제7호 참조.

3. 외화획득용 서비스지원제도 마련

현행 법령은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원료·기재, 즉 물품 위주의 외화획득용 원료, 시설기재 및 제품의 수입 또는 국내구매에 대하여만 수출입실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세제지원 또는 행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서비스무역의 활성화를 위하여는, 첫째 용역⁴³⁾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도 외화획득용 원료·기재⁴⁴⁾의 개념안에 포함시켜 물품의 경우와 대등하게 부가세 영세율 혜택과 수출입실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정의조항에 기존의 외화획득용 원료·외화획득용 시설기재·외화획득용 제품뿐만 아니라, ‘외화획득용 용역’ 및 ‘외화획득용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해 본다(시행령안 제2조 제7호).

둘째, ‘외화획득용 용역’ 또는 ‘외화획득용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에 대한 개념은 외화획득에 제공된 용역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로서 각각 본 법령에 명시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것으로 하고, 외화획득용 서비스의 지원범위도 이에 한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해 본다(시행령안 제2조제10의2호).

셋째, 외화획득용 서비스에 대한 구매확인서⁴⁵⁾의 발급신청서류를 완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해 본다(시행령안 제38조의2). 즉, 외화획득용 용역 또는 전자적 무체물에 대한 구매확인서는 i) 기존의 수출신용장 대신 보증신용장(Standby L/C), ii) 기존의 수출계약서 대신 용역 또는 전자적 무체물의 공급계약서, iii) 기타 주문서·오퍼·견적서 등 약식의 수출계약 입증서류를 제출하여도 발급 받을 수 있게 완화하여야 한다(규정안 제4-2-7조).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용역 또는 전자적 무체물의 수출은 지급보증용·계약이행용 보증신용장, 용역계약서 또는 온·오프라인 컨텐츠공급계약서 등에 의하여 이행되며, 물품의 경우도 관행상 정식 수출계약서의 작성 없이 당사자간의

43) 대외무역법 제2조 제1호 이하 ‘용역’이란 표현은 물품에 대비하여 ‘서비스’로 사용되어야 합당하지만, 법 개정전까지는 시행령안에서도 현행대로 ‘용역’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44)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라 함은 외화획득용 원료·외화획득용 시설기재·외화획득용 제품을 말한다(대외무역법시행령 제2조 제7호).

45) “구매확인서”라 함은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된 물품등을 외화획득용 원료·기재 또는 물품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증서를 말한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1-0-2조 제17호).

약식 주문서·오퍼·견적서 등에 의하여 거래되기 때문이다. 다만 수출계약 입증서류로서 주문서·오퍼·견적서 등을 인정하되, 수출물품등의 품목·수량·가격 등에 기본합의가 있을 경우 유효하도록 하여야 한다.⁴⁶⁾

넷째, 외화획득 이행기간의 기산은 서비스무역의 경우 수입통관일이 없기 때문에, 외화획득용 ‘용역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공급일’(수입일)부터 기산하여 2년(기준)까지로 하는 방안을 제시해 본다(시행령안 제35조).

4. 기타 대외무역관리규정상의 보완책

현행 법령은 용역, 지적재산권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등 ‘서비스’의 거래를 본법에서 무역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법 제2조 제1호), 법령의 자기 완결성을 위하여도 ‘서비스무역’에 관한 확립된 정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동법시행령의 모두에 WTO/GATS 제1조 제2항(서비스무역)의 정의와 현행 관리규정 제1-0-2조의2 제1항(용역의 공급) 내용을 종합하여 ‘서비스 무역’에 관한 정의조항을 두는 방안을 제시해 본다(시행령안 제2조 제3호).

즉, “서비스수출”이라 함은 i) 용역의 국경간 공급, ii) 비거주자의 국내에서의 소비, iii) 거주자의 상업적 외국주재, iv) 거주자의 개인적 외국주재 중의 한 유형에 의한 제공으로 하고, “서비스수입”은 그 반대방향으로 정의한다.

기타 디지털 방송망을 통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제공하는 것도 서비스무역의 한 방법으로 수용하는 방안을 제시해 본다(규정안 제1-0-2조의4).

최근 국가간 정보통신수단으로서 DMB 방송망 등의 상업적인 기능이 확대되므로, 전자적 무체물의 수출입방식에 ‘방송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망을 통한 송신·수신’을 추가하는 방안이 시의 적절하다고 본다.⁴⁷⁾

46) UN 통일매매법 제19조 제3항 참조(계약의 실질적 조건).

47) 방송법 제2조 제1호: “방송”이라 함은… 가. 텔레비전방송, 나. 라디오방송, 다. 데이터방송, 라. 이동멀티미디어방송 등을 말한다.

V. 결 언

상술한 바와 같이 대외무역법령은 산업구조의 소프트화와 서비스화 추이에 맞추어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최근 우리나라의 서비스무역이 2005년 1~9월 중에 이미 105.9억불 적자를 기록하여⁴⁸⁾ 전년도의 전체 87.7억불 적자규모를 크게 상회하는 시점에서 심각하게 검토해야 할 문제이다.⁴⁹⁾

첫째, 무역대상 ‘서비스’의 범위에 기존의 일부 지식기반서비스뿐만 아니라, 운수·관광 등 다수의 일반서비스를 추가하고, 교육·의료·건설업 등 전문적 서비스와 지적재산권 등의 누락된 주요 항목을 추가하여야 한다.

둘째, 물품 위주의 수출실적확인제도를 모든 서비스분야에 적용가능하도록 수출입확인서 발급기관을 확대하고 전산관리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며, 기타 소액물품·상계물품등의 수출입실적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여야 한다.

셋째,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는 서비스재를 포함하여 정의를 다시 하고 구매 확인서의 발급요건을 대폭 완화하며, 기타 ‘서비스무역’의 정의도 명확히 하고 디지털방송 등에 의한 수출입방식도 수용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여야 한다.

나아가 대외무역법은 물품 중심의 사고에서 제정된 지 20여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현재의 대외무역환경에 적합하도록 체계적인 재입법의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특히 서비스무역 활성화를 위하여는 법 개정뿐만 아니라 정부내에 서비스무역 전담부서 내지 전문 연구기관도 설치하여야 할 것이다.

즉, 정부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서비스부문의 제조업 대비 차별제도를 철폐하고 서비스기업의 전략적인 수출지원과 고용창출 및 경쟁력 강화 등 무역진흥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며, 기업에서도 글로벌 무한경쟁시대에 서비스재의 품질향상과 서비스 공급체인관리(s-SCM) 전략 등을 수립하여 WTO 이후 급속히 개방되고 있는 세계 서비스시장을 적극 공략해 나가야 할 것이다.

48) 한국무역협회, “서비스무역 현황과 시사점”, 2005. 10, p. 1.

49) 산업자원부가 최근에 대외무역법령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으나, 이는 서비스업계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치므로 본 연구자료가 차후의 개정방향에 다소 도움이 되길 바란다.

參 考 文 獻

- 경제장관간담회, “서비스수출 증대대책”, 2004. 6.
- 권순만, “의료서비스산업의 발전방안”, 「지식서비스포럼」(산업자원부등), 2005. 6.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TO 출범과 신교역질서」, 1994. 7.
- 산업자원부, “서비스수출 활성화를 위한 대외무역법령 개정방안”, 2005. 9.
- 서비스산업 관계장관회의,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추진방안”, 2005. 3.
- 이한상 · 김준학, 「지식재산권법」, 제일법규, 2000.
- 임천순, “교육서비스산업의 진단과 과제”, 「지식서비스포럼」(상계자료), 2005. 6.
- 한국무역협회, “서비스무역 현황과 시사점”, 2005. 10.
- 한국무역협회, “지식서비스기업 수출실태조사”, 2002. 11.
- 한국수출보험공사, “기술 · 용역수출보험제도 도입검토(안)”, 2004. 12.

- Bateson, John E.G., Managing Services Marketing, 3rd ed., Dryden Press, 1995.
- DiMatteo, Larry A. and Dhooge, Lucien J., International Business Law, Thomson, 2nd ed., 2005.
- Hoffman, K. Douglas and Bateson, John E.G., Essentials of Services Marketing: Concepts, Strategies & Cases, 2nd ed., South-Western, 2001.
- OECD, Code of Liberalisation of Current Invisible Operations, 2004. 9.
- Sjoholt Peter, “The Internationalization of Commercial Activities”, Trading Services in the Global Economy, Edward Elgar, 2002.
- USA, United States Code (U.S.C.) 1982; Trade Act of 1974; 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 Uniform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 Act 2002 (UCITA).
- WTO, Agreements on Intellectual Property (TRIPS).
- WTO, Agreements on Trade in Services (GATS).
- www.ustr.gov
- <http://www.wto.org>
- <http://stat.kita.net>.
- <http://ecos.bok.or.kr>